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총포 등 제조업 허가 등 결격사유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명시 등〉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117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부
2. 제 출 일 : 2024. 07. 22.
3. 회 부 일 : 2024. 0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업 허가, 소지 허가 및 보안책임자 면허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업 허가 결격사유(안 제5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소지 허가 결격사유(안 제13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취급 금지 대상(안 제19조) 화약류 제조 및 관리 보안책임자 면허 결격사유(안 제29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임원의 결격사유(안 제55조)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제조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5조(제조업자의 결격사유) ---- ----- ----- -----.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 -----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

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2. (생략)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 6의2. (생략)

6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 설>

7.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9조(취급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을 취급(제조 · 판매 · 수수 · 적재 · 운반 · 저장 · 소지 · 사용 · 폐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총포 · 도검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다시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5.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취급 금지) -----

석공을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영화 또는 연극 등을 위하여 일시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3.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29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 3. (생략)

4.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생략)

제5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2.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9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임원의 결격사유) -----

-----.

1. 2. (현행과 같음)

3. <u>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 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4. ~ 6. (생 략)	3. ----- <u>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 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u> 4. ~ 6. (현행과 같음)
--	---

헌법재판소는 최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라는 규정은 그
에 후속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는 의미라고 판시
한바 있음¹⁾. 이에 개정안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집행유
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45

1)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9헌바118 결정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이므로(형법 제62조 제 1항 참조) 형의 집
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형의 선고’는 있는 것이다. 우리 형법상의 형벌체계에 의할
때 집행유예의 선고와 형의 선고는 서로 배타적인 택일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의 선고가
먼저 있고나서 그에 후속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관계이다. 따
라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라고 규정할 뿐 그에 이어서 아무런 제한도 부가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는 형의 선고만 있으면 되고 그에 후속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는 의미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분명히 드러난다(헌재 2003. 1. 30. 2002헌바53 참조).